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244
----------	-------

발의연월일 : 2024. 1. 9.

발 의 자 : 천준호 · 민병덕 · 용혜인
강병원 · 이은주 · 정태호
장혜영 · 남인순 · 강은미
강훈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 제22조제5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면제하고 있음.

해당 규정은 2020년 1월 15일 한차례 개정을 통해 그 이전까지는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를 적용받고 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음.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그 성격상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과 차등적으로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2023년 3월 14일 개정을 통하여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 특례 적용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한 것임.

하지만 법 공포 이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과세액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대한 금액임에도 구제 방안이 없어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부과된 주민세에 대한 환급특례를 두어 해당 단체의 재정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안 제22조의5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본문 중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5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를 포함한다)]”라 한다”로 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한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이 있는 경우 부과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생략) ⑤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 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 세를, <u>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 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를 포 함한다)</u> 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 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 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 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 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 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 하지 아니한다.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u>사회복지법인등(「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른 활동지원기관을 설치·운영 하는 법인·단체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5에서 “장애 인활동지원기관”이라 한다)를 포함한다)</u>]
⑥ ~ ⑧ (생략) <신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의5(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세액환급 특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한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이 있는 경우 부과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환급하지 아니한다.